

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앤더슨 모형을 중심으로

Factors Determining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Later Life of the Elderly with Industrial Injury: Based on Andersen Behavioral Model of Health Care Utilization

문용필*, 원서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ng-pil Moon(yphoon06@naver.com)*, Seo-jin Won(wseojin@dcu.ac.kr)**

요약

본 연구는 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과거 산재당시 종사상지위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해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요인에서는 학력이 높고 정규직인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여성 근로자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이인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욕구요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경제적 노후준비 | 앤더슨모형 | 산재근로자 | 고령자 | 산재보험패널(PSWCI)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ddress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 of the elderly with industrial injury using Andersen model. In addition, it is also to explore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employment status between regular employees and non-regular employees. The authors analyze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PSWCI)'s 1st wave data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authors found gender and education were related to economic preparation. In addition, earned incom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degree to which pain interferes with daily life and the live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were associated with economic preparation. But national pen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economic prepar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researchers addressed political implications to enhance financial security of injured workers.

■ keyword : | Economic Preparation | Andersen Model | Industrial Injured Workers | Elderly | PSWCI(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2013년에는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2.2%로 증가하였다[1].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빈곤 및 부양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퇴직으로 인한 주 소득원의 상실과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년기의 지속적인 증가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65세 노인의 기대 여명은 남성 17년, 여성 22년으로 나타났다[1],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의 48.4%는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능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8.1%에 달했다[1]. 이에 따라 2014년 고령자통계에서는 건강문제(65.2%)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53.0%)가 노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 은퇴 이후에 노후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으로의 전환 등 다층연금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왔다[2-6]. 그러나, 연금 개혁이 진행되면서 필연적으로 연금체계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생기게 되는데[7], 이 때 특히 일반 고령자보다도 근로활동 중 산업재해 경험이 있는 고령자가 연금가입상태 및 유지기간 등에서 다른 고령자에 비해 특히 취약하게 되었다[8]. 은퇴 이후 고령자에게는 연금이나 근로소득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지만, 과거에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인들은 일반 노인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확률이 높아졌다. 즉, 과거에 직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고, 저임금 일자리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낮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노후빈곤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산재근로자로 지칭되는 근로자는 근로 중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말하며, 업무상의 사유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을 의미한다[9][10]. 2012년

기준,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는 92,256명(재해율 0.6%)이었으며, 사망 1,864명, 부상 83,349명, 업무상질병이환자는 6,742명이었다[11]. 이들 산업재해자 중에는 남성이 80.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0-54세가 16.9%, 55-59세가 14.7%, 60세 이상 근로자가 16.8%로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 근로자의 재해율이 높았다. 이렇게 중고령층의 산업재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산업재해 이후 휴직 혹은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노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상당수의 산재근로자는 산재경험 이후에 기존의 직업보다 더 임금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냈다[12][13]. 또한, 박수경[14]은 산업재해 이후 1-7등급의 중증장애 판정을 받는 대상자의 83.1%가 무직이고, 8-14등급의 경증장애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 중에서도 52.2%가 무직임을 지적하며, 산업재해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상황에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홍백의[15]는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즉,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과거의 근로형태에서 비정규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노후에 계속적으로 빈곤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구나,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산재경험 이후에 근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산재근로자는 산재경험으로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되고, 재활 이후의 재취업시 원직장의 복귀가 어렵고, 정규직 고용형태의 일자리로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재당시 종사상지위상태에 따라서도 산재 이후에 일자리 복귀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를 파악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경우 근로사업장에 따라 종사상지위가 상이하여 이에 따른 고용형태 및 노년기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가 다르나[12][16][17], 그동안 경제적 노후준비 연구에서는 중고령자, 고령자, 65세 이상 노인, 배

이비부머 등 연령대에 따른 노후준비 연구들이 있었을 뿐이다[18-21].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산재경험 고령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앤더슨모형

앤더슨모형(Andersen model)은 의료서비스 이용 예측을 위한 대표적인 연구모형으로, 의료서비스 이용행동모델(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이라고 한다[22]. 앤더슨모형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앤더슨모형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자원요인(enabling factors), 욕구요인(need factors)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23-25], 이 중 선행요인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포함한다[25-27]. 자원요인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그 결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소득, 공식적/비공식적 지지,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 등을 의미한다[25-27]. 욕구요인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와 실제하는 질병의 유무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25-27].

앤더슨모형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22][24][25][27] 및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28]의 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Willis, Glaser와 Price[29]가 노인의 비공식적 지지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앤더슨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등 최근 들어 앤더슨모형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의료서비스 이용 행동과 유사하게 선행요인, 자

원요인, 욕구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앤더슨모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18-20][30-33].

Yuan[30]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였고, 박창제[19]는 45세에서 59세의 중고령자의 재무적 노후준비 행동을 파악하는데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였다. 박창제[20]의 다른 연구 역시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여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대비한 사적 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요인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을, 자원요인으로 경제활동, 가계소득, 자녀수, 집소유 여부, 고이자 저축, 주식 및 투자신탁, 유산상속, 경제만족도, 부채를, 욕구요인으로 공적 노후 미보장, 건강불만족, 장애, 주거지역을 포함하였다. 나지나 등[31]의 연구에서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역시 앤더슨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박창제[21]는 베이비부머와 전(前)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집단별 비교연구를 하였다. 즉, 고령층 및 예비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에서 앤더슨모형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앤더슨모형이 노후준비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본 연구에서도 앤더슨모형에 기반하여 고령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예측요인

노년기의 경제적인 능력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한편,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원이다[34]. 노후준비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은 노년생활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적, 사적 기체를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35]. 이렇듯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하지만[36],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경우 자녀 교육 및 결혼자금마련 등으로 은퇴 이후의 수입지출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대부분 단기 지출에 집중하고 있다[37].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다른 연령대와 달리 60세 이상 인구 중에는 충분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

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36],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이 더 큰 것이 현실이다. 권혁창 등[38]의 국민 노후보장패널 분석에서도 60대 이상 고령자는 60대 이하 연령대에 비해 노후에 대한 독립적 경제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연관된 인구 사회학적 예측요인으로 성별[18][20][34][39-41], 학력[18][20][31][34][42], 결혼상태[40]가 지속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노후준비의 가능성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최명화 등[39]은 40세 이상의 산업공단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연령, 학력, 자녀수가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 중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 가구소득[18][20][31][36][39][40][43], 연금수급[42], 국민연금 가입[21][33][43]이 지적되고 있다. 즉, 소득이 많고,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은 선행연구에서 다른 변수보다 중요하게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정화[36]의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소득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금융소득[21], 취업여부[31], 경제상태[41], 부채[20][31][44], 부동산소유여부[20] 역시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박창제[20]의 연구에서는 부채가 있는 사람이 노후준비가 더 되어있다고 나타나 부채가 노후준비의 수단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순돌 등[32]은 자원요인으로 민영보험(암, 실손 보험, 교통상해, 실버보험, 종신보험, 치과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기타 등) 가입여부를 조사하였다. 특히, 예비노인집단의 신체적 노후준비를 살펴보았는데, 산재근로자의 경우, 다른 일반노인들과 달리 장해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민영건강보험가입을 투입하여 노후준비 정도를 살펴보았다.

육구요인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질병유무[18], 장애 여부[20], 주관적 건강상태[39][40] 등이 경제적 노후준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신[44]의 연구에서도 가계총소득과 금융소득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은 베이비부머 연령대가 경제적인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근로자의 경우,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16][17]가 근로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산재 이후 복귀직장의 고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지적되었고, 정순돌 등[32]도 건강으로 인한 업무지장정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성별,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소득, 연금, 주택소유 등이 노후 경제력의 주요 예측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건강상태 역시 노후의 경제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원요인으로 근로소득과 주택여부를 주로 포함하고,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부채 및 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요인을 분석하지 못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 노인들[19-21][33]과 베이비부머집단[20]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산재경험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노후준비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산재근로자는 다른 고령자나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사고(혹은 질병)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고,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잦아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특성이 있다[12][16][39]. 또한 산재 이후 직업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박은주와 홍백의[12]는 상용직은 산재 후에도 종사상지위가 유지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종사상의 지위가 하락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산재근로자의 경우, 산재로 인한 장해, 재활서비스, 건강보험, 민간 의료보험,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45][46]. 이렇듯 산재근로자에 대한 선행연구가 몇몇 진행되어 왔으나, 산재 당시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를 파악한 논문이나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 다양한 자원요인과 육구요인을 포함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재 당시 사업장의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정규직집단과 비정규직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 분석을 실시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학력 및 결혼상태를 선행요인으로 구성하는 한편, 타 연구와 차별되게 자원요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경제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서 60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를 산재경험이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한정하여 이들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여 선행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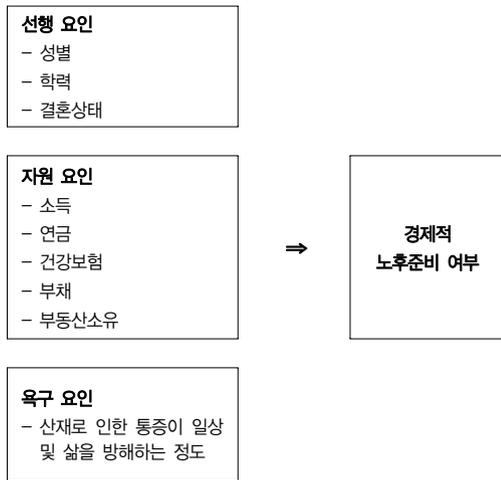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산재보험패널조사의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는 2012년 1-12월동안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산재요양종결자들의 재해 이후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대한 패널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산재보험패널조사

는 그동안 산재근로자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없었던 관계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였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되었다. 패널조사의 전체모집단은 2012년 산재보험 요양종결 산재근로자 82,493명이고, 그중에 장해등급(6개 범주)별 우선 할당 후 지역(9개 권역)별 비례배분하여 1차년도 연구대상자 2,000명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47][48]. 본 조사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에서 2014년부터 공개한 “산재보험패널”데이터(<http://kcom.gallup.co.kr/>)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산재보험패널의 조사대상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360명(정규직 127명, 비정규직 233명)이다. 그러나 산재보험패널조사는 1차조사의 특성상 가중값 투입이 강하게 권고되어, 산재보험패널조사 분석지침에 따라 데이터 상의 가중치 변수를 적용하여 가중값을 산출하였다[49]. 가중값은 추출단위의 상이한 추출률을 보정하거나 무응답이나 추출률의 부정확 등으로 발생하는 편향을 감소시켜 추정도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된다[50]. 또한 가중값을 사용하면 조사시점의 모집단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정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표본의 결과가 아니라 모집단 전체에 대한 추정 및 예측이 가능하다[50]. 특히 산재보험패널의 경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높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에서의 비율과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해 가중값 투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패널 조사에서 제시된 가중값을 적용한 최종 분석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13,929명(정규직 5,508명, 비정규직 8,421명)이다.

2.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인 경제적 노후준비는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 1차 조사표[44]에서 만 60세 이상자에게만 질문한 “노년 준비 실태에 대하여 노후자금 준비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위 질문에 대해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다’, ‘준비하였다’는 ‘노후자금 준비를 하였다(1)’로, ‘준비하지 않았다’,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노후자금 준비를 하지 않았다(0)’로 재코딩하였고, 이 이분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선행요인으로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학력, 결혼상태를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의 이분변수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무학(1)에서 대졸이상(5)으로 측정하였으며, 결혼상태는 배우자 있음(1)과 배우자 없음(0)으로 재코딩한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자원요인은 소득, 연금, 건강보험, 부채, 부동산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소득으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2가지를 포함하였으며, 각각 2012년 기준 금액을 연속변수로 포함하였다. 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변수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민간 의료보험의 가입여부에 대해 가입함(1)과 가입하지 않음(0)의 이분변수로 측정하였다. 부채는 가구부채액을 연속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부동산 소유여부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1)과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음(0)의 더미변수를 투입하였다.

욕구요인으로서는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를 포함하였다.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는 전혀 없음(1)에서 항상 있음(4)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변수 구분	변수설명
선행요인	성별	-	남성(1), 여성(0)
	학력	-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이상(5)
	결혼상태	-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자원요인	소득	근로소득	2012년 기준, 연속변수
		금융소득	2012년 기준, 연속변수
	연금	국민연금	가입함(1), 가입하지 않음(0)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가입함(1), 가입하지 않음(0)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가입함(1), 가입하지 않음(0)
	부채	가구 총 부채액	조사당시 기준, 연속변수
부동산 소유 여부	-	있음(1), 없음(0)	
욕구요인	건강상태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	전혀없음(1)-항상있음(4)
종속변수		경제적 노후 준비여부	노후준비 하였음(1), 노후준비하지 않았음(0)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9.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위해서는 이분변수와 더미변수들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속변수들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서 선행요인으로 성별, 학력, 결혼상태를 포함하였다. 자원요인으로 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국민연금 가입상태, 건강보험 가입상태(국민건강보험, 민간 의료보험), 부채, 부동산 소유여부를 포함하였다. 욕구요인으로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를 포함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구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산재당시 정규직이었던 산재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와 산재당시 비정규직이었던 산재근로자(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정규직 근로자의 남성과 여성은 각각 3,782명(68.7%)과 1,726명(31.3%)이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보다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남성 78.8%, 여성 21.2%). 학력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초졸, 중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무학과 초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요인 중 소득요인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금융소득은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소득 기준으로 1,157만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1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소득은 연간소득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만3천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9천원으로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가 있었다.

보험가입여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정규직 근로자 4,192명(76.1%), 비정규직 근로자 2,098명(24.9%)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도 정규직 근로자 4,980명(90.4%), 비정규직 근로자

3,095명(36.8%)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비율이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정규직 근로자, 49.4%, 비정규직 근로자 48.9%). 가계의 부채는 정규직 근로자 1,476만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816만원보다 높았고, 부동산소유여부는 정규직(76.0%)이 비정규직(6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육구요인을 살펴보면,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를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한 사람은 정규직 근로자가 1,780명(32.3%)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1,589명(18.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구분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명(%)	명(%)
성별	남성	3,782(68.7)	6,639(78.8)
	여성	1,726(31.3)	1,782(21.2)
	무학	563(10.2)	1,334(15.8)
학력	초졸	1,735(31.5)	3,406(40.4)
	중졸	1,684(30.6)	2,099(24.9)
	고졸	1,272(23.1)	1,566(18.6)
	대졸이상	254(4.6)	17(0.2)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	1,060(19.2)	1,446(17.2)
	배우자 있음	4,448(80.8)	6,975(82.8)
국민연금	가입안함	1,315(23.9)	6,323(75.1)
	가입함	4,192(76.1)	2,098(24.9)
국민건강보험	가입안함	528(9.6)	5,326(63.2)
	가입함	4,980(90.4)	3,095(36.8)
민간의료보험	가입안함	2,660(50.6)	4,271(51.1)
	가입함	2,600(49.4)	4,093(48.9)
부동산소유여부	무	1,324(24.0)	3,005(35.7)
	유	4,184(76.0)	5,416(64.3)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	전혀없음	1,497(27.2)	919(10.9)
	어느정도	2,118(38.4)	4,529(53.8)
	상당기간	825(15.0)	1,063(12.6)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	항상있음	1,069(19.4)	1,910(22.7)
	아니오	3,728(67.7)	6,832(81.1)
예	예	1,780(32.3)	1,589(18.9)
	구분	평균금액 (표준편차)	평균금액 (표준편차)
근로소득(만원)	1,157.7(948.9)	1,120.0(740.1)	
금융소득(만원)	2.3(19.0)	0.9(4.6)	
부채(만원)	1,476.2(3,820.5)	815.7(2,264.3)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산재당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선행요인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성별과 학력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05배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았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1.876배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성별, 학력 외에 결혼상태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남성이 여성보다 0.448배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였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0.890배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0.519배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둘째, 자원요인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국민연금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계부채, 부동산소유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OR=1.001), 가계부채액이 높을수록(OR=1.000)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0.438배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였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0.107배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였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0.265배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 가계부채, 국민연금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민간의료보험 가입, 부동산소유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OR=1.001), 가계부채액이 높을수록(OR=1.00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OR=11.658), 부동산 소유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OR=5.579)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11.658배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동산소유자는 미소유자에 비해 5.579배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0.014배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였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0.431배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

표 3. 산재당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대한 추정결과

구분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B	OR	95% CI		B	OR	95% CI	
			Lower	Upper			Lower	Upper
성별(여성)	.835	2.305***	1.668	3.185	-.803	.448***	.345	.582
학력	.629	1.876***	1.653	2.130	-.117	.890*	.804	.986
결혼상태(무)	-.181	.835	.587	1.186	-.657	.519***	.383	.703
근로소득	.001	1.001***	1.001	1.001	.001	1.001***	1.001	1.002
금융소득	-.004	.996	.985	1.007	-1.791	.167	.000	2.297
국민연금 가입여부(미가입)	-.826	.438***	.308	.622	-4.262	.014***	.010	.021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미가입)	-2.234	.107***	.066	.173	2.456	11.658***	8.733	15.564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미가입)	-1.326	.265***	.208	.339	-.841	.431***	.345	.538
가구부채	.000	1.000***	1.000	1.000	.000	1.000***	1.000	1.000
부동산소유여부(소유하지 않음)	-.296	.744*	.568	.974	1.719	5.579***	4.222	7.372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	-2.118	.120***	.101	.143	-1.419	.242***	.201	.291
Log likelihood	2133.459				3166.373			
LR χ^2 (df)	3320.370 (11)***				2512.529 (11)***			
Nagelkerke R-제곱	.756				.559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은 기준집단을 의미함

* <.05. ** <.01, *** <.001

성이 감소하였다. 즉, 자원요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오즈비가 11.658배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또,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근로소득액이 증가할수록, 가계부채액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 근로소득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20][31][36][51]. 선행연구에서 금융소득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재근로자에게는 금융소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20].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부동산소유가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부동산소유가 노후준비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국민연금과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와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의미가 노후자금을 준비했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연금과 보험은 노후자금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욕구요인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는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증가할수록 0.120배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증가할수록 0.242배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즉, 욕구요인 중에서는 산재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노후준비에 취약하여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40].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령근로자의 산재 경험 이후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산재당시 정규직이었던 정규직 근로자와 산재당시 비정규직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교분석을 통해 종사상지위별 노후준비의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연구결과, 전체 연구대상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32.3%, 비정규직 근로자의 18.9%만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선행연구인 중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성별과 학력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성별, 학력, 결혼상태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학력이 높은 남성 정규직 근로자와 학력이 낮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경제적 노후준비의 확률이 높았다. 학력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으나[11][13][15][25][40], 정규직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오히려 저학력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학력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혼상태와 경제적 노후준비의 관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유배우자가 노후준비에 미흡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는 전귀연 등[38]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선행연구와 달리 비정규직 산재근로자는 다른 고령자들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원요인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가계부채, 부동산 소유여부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가계부채, 부동산 소유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산재근로자인 현 60대 이상 고령자(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는 근로소득액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 자금을 준비할 여력이 있었다. 이는 산재경험 이후 산재근로자는 원직장복귀, 재취업 등을 통해 근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중요한 노후준비 소득원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18][20][31][36][40][42][51]. 그리고 부채액이 증가할수록 노후준비 자금 준비를 하고 있어 부채가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박창제[20], 이승신[44], 원서진 등[33]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는 부동산소유가 노후준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0]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부동산소유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산재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국민연금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76.1%가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미성숙,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국민연금이 현 60대 이상 산재근로자에게는 아직은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4.9%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정규직보다 더 취약함을 보여주었고, 산재이후에 재취업시 어려움이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에서 중요한 가입유지의 지속성이 취약하여 노후빈곤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90.4%이상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6.8%만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가 더 잘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여부가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 변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변수로 산재근로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재근로자는 산재경험 이후 병원이용, 재활서비스 등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등의 이용률이 높은 특성이 있고[16][17][52], 60대 이상 고령층은 연령으로 인한 보건의료비지출도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육구요인 중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작은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 된 경향이 있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은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상태가 좋았다. 특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재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율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기존 산재보험에서는 산재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후 사업장으로서의 복귀가 목표였다. 그러나, 이제

산재보험의 이념이 '배상'에서 '근로조건 보호'로, 이어 '생활보장'으로 변화, 확대 되고 있다. 또, 산업재해의 직종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산재의 인정범위도 넓어지는 동시에 근로자의 범위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점차 산재보험도 생활보장이라는 범주로 확대되면서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이자 사회보험으로서 역할이 점차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45][46].

연구결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18.9%)가 정규직 근로자(32.3%)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이 낮았는데, 이에 따라 산재보험도 단순히 근로자의 재해 후 사업장 복귀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근로활동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노후의 경제적 안정도모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이나 보험보다 아직까지는 근로소득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볼 때,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으로서 근로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산업재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산재 재활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산재근로자의 특성상 재해로 인한 후유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노년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들이 장기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지역에서 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해등급 1-3급 혹은 진폐장해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53].

또한, 노후준비가 부족한 산재경험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의 산재근로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54]. 고용노동부는 2015년 기준, 60세 이상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에 한하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시제정) 제도를 2012-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고용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시행중이기 때문에 향후 산재경험이 있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지원책 개발이 요구된다. 2013년부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별 연장되어 60대 고령자에 따라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고령자에 비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산재경험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책 및 노후준비수단 마련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재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종사상지위별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낸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종사상지위 구분(정규직, 비정규직)별로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산재패널이 구축된 이후 처음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2차 자료 분석으로 인해 종사상지위 구분이나 변수의 측정 및 활용, 패널자료의 특성(2014년 기준 1차년도까지 구축)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종사상 지위, 소득, 연금, 자산 및 가계지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건강 요인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궤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추후 산재보험패널이 3년차 이상 구축된 이후의 동태적 종단연구로 남겨 두기로 한다.

참고 문헌

- [1] 통계청, "2013 고령자통계", <http://www.kostat.go.kr>, 2013.
- [2] 김수완, "여성의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1호, pp.85-118, 2005.
- [3] 주은선, "신자유주의 시대의 연금개혁", 경제와 사회, pp.70-107, 2009.
- [4] 정창률, "국민연금기금의 근본성격에 관한 연구: 다양한 위상과 가능성 고찰",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1호, pp.51-73, 2010.
- [5] 문용필, "중고령자의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제58호, pp.89-110, 2012.

- [6] 정창률, 김진수, “기여형 기초연금 하의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비교연구: 영국, 스위스의 연금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적용 탐색”, 사회복지정책, 제40권, 제4호, pp.109-135, 2013.
- [7] De Deken, Johan J, Eduard Ponds, and Bart Van Riel, *Oxford Handbook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 Social Solidar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8] 문성현, *산재근로자 장기요양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2009.
-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
- [10] 근로복지공단, “2013 GOOD START 신입직원 입문과정 I”, 근로복지공단, 2013.
- [11] 고용노동부, “2012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2.
- [12] 박은주, 홍백의, “산재근로자의 산재 경험 후 중상장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장연구, 제28권, 제2호, pp.121-152, 2012.
- [13] J. P. Keogh, I. Nuwayhid, J. L. Gordon, and P. W. Gucer, “The impact of occupational injury on injured worker and family: outcomes of upper extremity cumulative trauma disorders in Maryland workers,” *Am J Ind Med*, Nov, Vol.38, No.5, pp.498-506, 2000.
- [14] 박수경, “산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3권, pp.162-185, 1997.
- [15] 홍백의,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4호, pp.275-290, 2005.
- [16] 박은주, “산재근로자의 재해 이후 첫 복귀직장에서의 고용지속기간”, 사회복지장연구, 제30권, 제2호, pp.191-220, 2014.
- [17] 박은주, “산재근로자의 재해 이후 취업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제45권, 제2호, pp.123-146, 2014.
- [18] 이신영,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1호, pp.205-224, 2009.
- [19]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pp.275-297, 2008.
- [20] 박창제,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대비한 사적 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장연구, 제27권, 제4호, pp.327-351, 2011.
- [21] 박창제, “베이비부머와 전베이비부머의 재무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3권, pp.309-335, 2014.
- [22] 강상경,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이용 제척 및 예측요인: 연령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3호, pp.83-108, 2010.
- [23] R. M. Andersen,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6, No.1, pp.1-10, 1995.
- [24] 전해숙, 강상경,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 의료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의 연령차: 고령화 사회의 의료서비스에 주는 함의”,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1호, pp.28-57, 2012.
- [25] 강상경, 전해숙, “연령대별 건강제척과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1차에서 7차까지의 만성질환 제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pp.61-84, 2013.
- [26] R. M. Andersen and J. F. Newman,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Health and Society*, Vol.51, No.1, pp.95-124, 1973.
- [27] L. A. Aday and R. Andersen,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access to medical care,” *Health Services Research*, Vol.9, No.3, pp.208-220, 1974.
- [28] E. H. Bradley, S. A. McGraw, L. Curry, A. Buckser, K. L. King, S. V. Kasl, and R. Andersen, “Expanding the Andersen model: The role of psychosocial factors in long-term care use,” *Health Services Research*, Vol.37, No.5, pp.1221-1242, 2002.

- [29] R. Willis, K. Glaser, and D. Price, "Applying the Andersen behavioural model to informal support among Britain's ethnic minorities," *Institute of Gerontology, King's College London*, 2010.
- [30] Yuan, Sarah Chui-Wai, *Determinants of Awareness and Knowledge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Financial Preparation for Future Care Needs among Older Adul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2006.
- [31] 나지나, 백승애, 신은경, 김미혜,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pp.29-54, 2010.
- [32] 정순돌, 김성원,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 영향요인: Andersen과 Newman 모델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제59권, pp.237-256, 2013.
- [33] 원서진, 문용필, 송인옥,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48권, pp.201-221, 2014.
- [34] 유인순, 최수일,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천안지역 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245-262, 2012.
- [35] 김미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준비교육의 방향", *노인인력개발포럼*, 제5호, pp.29-58, 2010.
- [36] 이정화,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2호, pp.275-289, 2009.
- [37] 여윤경,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제25권, 제1호, pp.21-36, 2005.
- [38] 권혁창, 송현주, 이은영, 임란, 박소현, 정희수, "제4차(2011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2012.
- [39] 최명화, 최수일, "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과 노후준비와의 관계-반월·시화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249-264, 2012.
- [40] 전귀연, 배문조,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 pp.13-24, 2010.
- [41] 강유진,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30·40·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4호, pp.159-174, 2005.
- [42] 송창국,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3호, pp.29-54, 2009.
- [43] 이용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53-261, 2013.
- [44] 이승신,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제2호, pp.73-95, 2013.
- [45] 박지순, "산재보험제도의 정책과제", *노동보험포럼* 제8호, 2011.
- [46] 윤조덕,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보건복지포럼*, 2012.
- [47] 근로복지공단, "제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유저가이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2014.
- [48] 근로복지공단, "제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조사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2014.
- [49] 근로복지공단, "제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2014.
- [50] 근로복지공단, "제1차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설명회 자료집(2014.6.13.)",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2014.
- [51] 김주성, 최수일,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3호, pp.97-119, 2010.
- [52] 박은주, "산재근로자의 첫 직업복귀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4호, pp.359-381, 2012.
- [53] <http://www.ssc.go.kr>
- [54] T. L. Blackwell, S. J. Leierer, S. Haupt, and A.

Kampitsis, "Predictor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return-to-work outcomes in workers' compensa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Vol.46, No.2, pp.108-114, 2003.

저 자 소 개

문 용 필(Yong-pil Moon)

정회원



- 2010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 복지학과(사회복지학 학사)
- 2012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 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5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 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수료)

<관심분야> :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노인복지

원 서 진(Seo-jin Won)

정회원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학사)
- 2004년 5월 :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사회복지학 석사)
- 2009년 12월 :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Work(사회복지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다문화복지